

고성군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제902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2. 23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2. 24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5. 3. 4 산업건설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- 주차장법령에서 위임한 주차장이용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자가 제반규정을 위반할 시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를 구체화 하고 주차장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(안 제4조제3호다목)
나.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(안 제17조제1항)
다.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부여(안 제17조제2항)
라. 과징금 채납자에 대한 징수 및 조치사항(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조례안 제4조 제3호 다항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5.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며,

- 주차장법 제24조의 2 제2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 징수규정을 신설하였음은 주차장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므로 보완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습니다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주차요금 받는 사람 복장이 제멋대로여서 분별하기 어렵다.
공통엑스포도 있고 고성 홍보를 위해서도 주차요금 징수자의 복장 통일 등을 조례로 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이런 기초질서부터 확립하기 바람.
- 답 : 조례개정후 읍면에 홍보하고 주차요금 징수자에 대하여 복장을 통일 하도록 하거나 조끼 등을 입히는 등 방법을 조치하겠습니다.
- 문 : 유료주차장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. 한대의 차량이 2개의 주차선을 사용하므로 주차에 어려움이 많다. 주차선을 지켜 주차하도록 지도바람.
- 답 : 그렇게 하겠습니다.
- 문 :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납부토록 하면 납부자가 납부하는데 이의가 없겠는가?
- 답 : 납부자에게 납부고지서가 도착하는 상당 기일을 5일을 두고 있으므로 납부기한은 충분합니다.
- 문 : 체납액 징수 대책은?
- 답 : 체납액은 지방세 징수에 따라하고 일반과태료는 가산금을 붙일 수 없고 과징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.
- 문 : 공통엑스포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홍보하고 있다. 공통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요금 징수자에게 공통엑스포 홍보 문구가 삽입된 복장 유지로 엑스포 홍보도 되고 주차요금 징수자라는 것을 동시 알 수 있도록 복장 등에 통일을 기해주시기 바람.
- 답 :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5. 3.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